

의안 번호	제3356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11월 16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11월 2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12월 11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12월 11일

2. 제안이유

-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관내 기업지원 전문기관을 유치하여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된 기업지원기관 및 정책 등에 대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, 김포시 산업구조에 맞는 제조업 특화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설치한 특수목적의 센터로서,
- 관내 기업지원 전문기관 유치 및 원활한 기업지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별도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전문기관 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용허가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 기관 규정 및 사용료를 신설(안 제4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사안임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사용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를 근거로 안 제4조

제2항제2호에 수익계약이 가능한 기관의 요건을 추가로 명시했으며,
현행 조례에서는 입주기관의 사용료율을 「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
따르도록 했으나 안 제4조제3항에서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으로 규정함.

- 이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
- 수익계약 진행 시 참고자료로 첨부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특혜 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